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6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서울불균형 물품 제조 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김영진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6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등에 대해서 관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의 지정기간은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공장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안 제89조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연장(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서울불균형물품의 면세(\$89) ○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및 관세의 감면 - 서울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해 지정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 * 동일한 산업내에서 제품의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현상을 보이는 물품 ① 항공기(부분품 포함) ②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지정 불가 대상 - 특허보세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지정기간 : <u>3년</u> -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관세감면 지정기간의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정기간: <u>10년</u> - (현행과 같음)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5),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61)

☐ 개정안은 서울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 감면 제조·수리 공장 (이하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관세법」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부분품 포함)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¹⁾ 이는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역관세현상이 발생하는 세율불균형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음.

[세율불균형 물품 개요]

세율불균형 물품

- 동일한 산업 내에서 제품의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逆進) 현상을 보이는 물품 (완제품 관세율 ≤ 원재료 관세율)

역관세 현상

-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관세율이 완제품의 관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
※ 역관세를 부과하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국내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외국 경쟁 제품과 경쟁력 상실

현행법은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효력의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세공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²⁾과 동시에, 그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갱신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³⁾

개정안은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

1)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3)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공장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제조·수리공장은 지정요건 미달로 인한 지정 취소 사례가 부재하고,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 중임.

[서울불균형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현황]

(단위: 개)

최초지정 산업구분	~2014년	2015~2019년	2020~2021년	2022~2024년	합계
항공기	33	22	15	19	89
반도체장비	-	1	1	1	3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며 장기운영 중이며⁴⁾ 실무적으로도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연장 절차와 별도로,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제조·수리공장 중 지정된 공장들의 운영실태를 관리·감독 중임. 이에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관련 기업의 3년을 주기로 한 갱신 서류 구비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서울불균형물품 관련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산업은 항공기·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수리업으로, 초기투자비용이 큰 산업임과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

4) 2011년 이후 지정취소 사례는 폐업, 법인분할·합병, 타 관할로의 이전 등 142건이며 10년 이상 제조·수리공장을 운영한 공장이 전체 제조·수리공장의 35.9%임.

를 창출하는 산업군 중 하나임. 개정안과 같이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경우 관세 관련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시설투자 및 장기계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세관당국의 관리하에 보다 엄격한 기준·절차가 적용되는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제도는 과거 세율 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보세공장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제조용원료품 감면세’ 제도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임.⁵⁾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원료나 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반면⁶⁾, 제조·수리 공장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내국물품’을 반입해 이를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당국의 관리·감독 수준이 더 엄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은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⁷⁾, 세율불균형 물품의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세관당국의 관리수준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관세법」 김태인·정재완, 도서출판 청람

6)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특허기간)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158